



제 1042 호

2012년 5월 8일 화요일

선 람	기관의 장

공 고

○ 공고 제2012- 706호 도시관리계획(장수구역 지구단위계획)결정(변경) 2
을 위한 열람 공고

회 람								
--------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

공 고

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2-706호

도시관리계획(장수구역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을 위한 열람·공고

인천도시관리계획(장수구역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을 위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5조 규정에 의거 입안하고, 같은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관리과(☎453-2983)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며,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·공고 기간내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2012. 5. 8.

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

1.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 주요내용

가.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(변경)

• 녹지 결정(변경)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세분	위 치	면 적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신설	5	장수 5녹지	경관녹지	장수동 767-4번지	-	중)100.5	100.5	-	
신설	6	장수 6녹지	경관녹지	장수동 789-22번지	-	중)218.3	218.3	-	

※ 신설사항만 표시

• 녹지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5	장수 5녹지	• 경관녹지 신설 • 위치 : 남동구 장수동 767-4 번지 • 면적 : 100.5㎡	• 지역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및 도시경관의 제고를 위해 경관녹지 신설
6	장수 6녹지	• 경관녹지 신설 • 위치 : 남동구 장수동 789-22 번지 • 면적 : 218.3㎡	• 지역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및 도시경관의 제고를 위해 경관녹지 신설

나.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(변경)

○ 획지 합병 및 분할 기준 변경

구 분		건축물 용도	규 모
합병 기준	기정	단독, 다세대주택 용지, 근린생활용지	동일 소유토지로서 필지 사용목적이 같은 경우
	변경	단독, 다세대주택용지(B)	동일 소유토지로서 사용목적이 같으며 획지 최대면적을 660㎡이하로 합병하는 경우
		근린생활시설용지(A)	동일 소유토지로서 사용목적이 같으며 획지 최대면적을 1,000㎡이하로 합병하는 경우

※ 분할기준은 변경사항 없음

○ 변경사유

- 건축현황을 반영하여 건축물 용도별 획지 합병에 관한 적정 규모를 설정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목적에 부합하는 양호한 주거환경 조성

다. 기타공동개발에 관한 계획

○ 건축현황을 반영한 공동개발 권장 신설

라. 기타 지구단위계획 : 변경없음

2. 관계도서 : 게재 생략(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 및 관계도면 등 게재 생략된 관계도서는 열람 장소에 비치)

3. 열람기간 : 공고일로부터 14일간

- 상기 입안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4. 열람장소 :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리관리과(☎453-2983)